

(토지)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최원호

최원호 (인)

감정평가액	오억구천팔백육십만사천원정 (₩598,604,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규현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경매1계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세우 (2025타경123)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2025. 03. 05	2025. 03. 04 ~ 2025. 03. 05	2025. 03. 05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²)	단가	금액
	토지	15,421	토지	15,421	-	598,604,000
		이	하	여	백	
	합계					₩598,60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소재 '가시내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경매1계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3월 5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3월 4일 ~ 2025년 3월 5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 ① 미상임.

3.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3)토지는 현장조사일 현재 대부분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중인바,불법형질변경여부를 재확인
하시기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3 외 3필지	
토 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이용상황	전, 자연림
	지 목	전, 임야
	면 적	15,421 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1. 토지 감정평가액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예천읍 고평리 634-3	4,026	전	전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급경사지	17,600
2	예천읍 고평리 634-8	129	전	전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급경사지	17,600
3	예천읍 고평리 634-9	6,281	임야	전 및 자연림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급경사지	3,140
4	예천읍 고평리 639	4,985	전	전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지	22,400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m ²)
A	예천읍 고평리 642	2,334	답	전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환경사지	23,800
B	예천읍 청복리 290	15,964	임	자연림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환경사지	3,330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계획관리	0.207	경상북도 예천군 (25.01.01~25.03.05) 2025.01.01 ~ 2025.01.31 : 0.100 (1 + 0.00100) * (1 + 0.00100 * 33/31) ≒ 1.00207
B 계획관리	0.207	경상북도 예천군 (25.01.01~25.03.05) 2025.01.01 ~ 2025.01.31 : 0.100 (1 + 0.00100) * (1 + 0.00100 * 33/31) ≒ 1.00207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다. 지역요인 비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라.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1~4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5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농로의 상태에서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0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임야지대 [일련번호3 / 표준지B]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1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임도의 상태에서 우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3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지세, 경사등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43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기타
-	마을주변 농경지대	세로변	35,000-50,000	계획관리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다) 본건 평가사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1)	예천읍 고평리 634-3	4,026	계획관리	전 전	2022.09.02	담보	45,000	-
(2)	예천읍 고평리 634-8	129	계획관리	전 전	2022.09.02	담보	45,000	-
(3)	예천읍 고평리 634-9	6,281	계획관리	임야 자연림	2022.09.02	담보	23,000	-
(4)	예천읍 고평리 639	4,985	계획관리	전 전	2022.09.02	담보	45,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²)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5)	예천읍 고평리 472-**	76	계획관리	답 전기타	2024.06.28	담보	75,000	-
(6)	예천읍 청북리 40*-*	1,348	계획관리 자연녹지	전 전	2023.05.18	법원경매	98,000	-
(7)	예천읍 청북리 3*-*	5,630	계획관리	임야 자연림	2023.03.03	협의보상	16,35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예천읍 고평리 6**	계획관리 전/전	134,100,000원 (@ 45,000원/m ²)	2022.08.24 -	2,956m ² -	-
	의 견	1) 2) 토지가격 : 134,100,000원 / 2,956m ² ≒ 45,000원/m ²				
#2	예천읍 고평리 5**	계획관리 전/전	20,400,000원 (@ 45,000원/m ²)	2022.03.23 -	450m ² -	-
	의 견	1) 2) 토지가격 : 20,400,000원 / 450m ² ≒ 45,000원/m ²				
#3	예천읍 청북리 산11*	계획관리 임야/자연림	191,800,000원 (@ 10,000원/m ²)	2024.11.15 -	18,574m ² -	-
	의 견	1) 2) 토지가격 : 191,800,000원 / 18,574m ² ≒ 10,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⁵⁾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75,000	1.0092	1.000	0.612	46,322	1.942	1.94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⁵⁾ (원/㎡)		
	23,800	1.00207	-	-	23,849		

¹⁾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5)을 선정함.

²⁾시점수정(2024.06.28 ~ 2025.03.05, 예천군 계획관리지역) : 0.92% (1.0092)

³⁾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5)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5) 대비

개별요인 비교치 (농경지대(전))					격차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0.80	0.90	0.85	1.00	1.00	0.612

⁵⁾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 비교표준지 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¹⁾ (원/m ²)	시점 ²⁾ 수정	지역 ³⁾ 요인	개별 ⁴⁾ 요인	산출단가 ⁵⁾ (원/m ²)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16,350	1.02289	1.000	1.000	16,724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m ²)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⁵⁾ (원/m ²)	5.011	5.01
	3,330	1.00207	-	-	3,337		

¹⁾평가사례 : 비교표준지B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7)을 선정함.

²⁾시점수정(2023.03.03 ~ 2025.03.05, 예천군 계획관리지역) : 2.289% (1.02289)

³⁾지역요인 : 비교표준지B는 평가사례(7)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⁴⁾개별요인 : 비교표준지B와 평가사례(7)가

개별요인 비교치 (임야지대)				격차율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1.00	1.00	1.00	1.000

⁵⁾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²)							
1	A	23,800	1.00207	1.000	1.050	1.94	48,580	49,000	농경지대 (전)
2	A	23,800	1.00207	1.000	1.050	1.94	48,580	49,000	농경지대 (전)
3	B	3,330	1.00207	1.000	1.430	5.01	23,906	24,000	임야지대
4	A	23,800	1.00207	1.000	1.050	1.94	48,580	49,000	농경지대 (전)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2,#3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2	예천읍 고평리 5**	계획관리 전/전	20,400,000원 (@ 45,000원/m ²)	2022.03.23 -	450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20,400,000원 / 450m ² ≒ 45,000원/m ²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3	예천읍 청북리 산1**	계획관리 임/자연림	191,800,000원 (@ 10,000원/m ²)	2024.11.15 -	18,574m ² -	-
	의견	1) 2) 토지가격 : 191,800,000원 / 18,574m ² ≒ 10,000원/m ²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2 계획관리	3.728	경상북도 예천군 (22.03.23~25.03.05) 2022.03.01 ~ 2022.03.31 : 0.144 2022.04.01 ~ 2022.04.30 : 0.082 2022.05.01 ~ 2022.05.31 : 0.119 2022.06.01 ~ 2022.06.30 : 0.173 2022.07.01 ~ 2022.07.31 : 0.235 2022.08.01 ~ 2022.08.31 : 0.196 2022.09.01 ~ 2022.09.30 : 0.197 2022.10.01 ~ 2022.10.31 : 0.190 2022.11.01 ~ 2022.11.30 : 0.034 2022.12.01 ~ 2022.12.31 : 0.019 2023.01.01 ~ 2023.12.31 : 0.787 2024.01.01 ~ 2024.12.31 : 1.394 2025.01.01 ~ 2025.01.31 : 0.100 $(1 + 0.00144 * 9/31) * (1 + 0.00082) * (1 + 0.00119) * (1 + 0.00173) * (1 + 0.00235) * (1 + 0.00196) * (1 + 0.00197) * (1 + 0.00190) * (1 + 0.00034) * (1 + 0.00019) * (1 + 0.00787) * (1 + 0.01394) * (1 + 0.00100) * (1 + 0.00100 * 33/31) \approx 1.03728$
#3 계획관리	0.400	경상북도 예천군 (24.11.15~25.03.05) 2024.11.01 ~ 2024.11.30 : 0.145 2024.12.01 ~ 2024.12.31 : 0.116 2025.01.01 ~ 2025.01.31 : 0.100 $(1 + 0.00145 * 16/30) * (1 + 0.00116) * (1 + 0.00100) * (1 + 0.00100 * 33/31) \approx 1.004$

라. 지역요인 비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마.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1 / 거래사례#2]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5	본건이 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에서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5	본건이 사례 대비 경작의 편부에서 우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10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2 / 거래사례#2]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5	본건이 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에서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5	본건이 사례 대비 경작의 편부에서 우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10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임야지대 [일련번호3 / 거래사례#3]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2.50	본건이 사례 대비 지세 등에서 우세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2.5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농경지대(전) [일련번호4 / 거래사례#2]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5	본건이 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에서 우세함.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5	본건이 사례 대비 경작의 편부에서 우세함.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10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²)	시산가액 (단가)(원/m ²)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2	45,000	1.000	1.03728	1.000	1.103	51,485	51,000
2	#2	45,000	1.000	1.03728	1.000	1.103	51,485	51,000
3	#3	10,000	1.000	1.00400	1.000	2.500	25,100	25,000
4	#2	45,000	1.000	1.03728	1.000	1.103	51,485	51,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비고
1	49,000	51,000	-
2	49,000	51,000	-
3	24,000	25,000	-
4	49,000	51,000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어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598,604,000
	합 계	598,604,000

결정의견	경매로서의 평가목적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2. 기타 참고사항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3	전	계획관리지역	4,026	4,026	49,000	197,274,000	
2	상동	634-8	전	계획관리지역	129	129	49,000	6,321,000	
3	상동	634-9	임야	계획관리지역	6,281	6,281	24,000	150,744,000	
4	상동	639	전	계획관리지역	4,985	4,985	49,000	244,265,000	
소 계								₩598,604,000	
합 계								₩598,604,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소재 "가시내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농경지대로서 농경지,임야,농가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출입 가능하며 농경지로서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4)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하향 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되어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3)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중이며 미개간부분은 법면 및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4)남측으로 비포장 농로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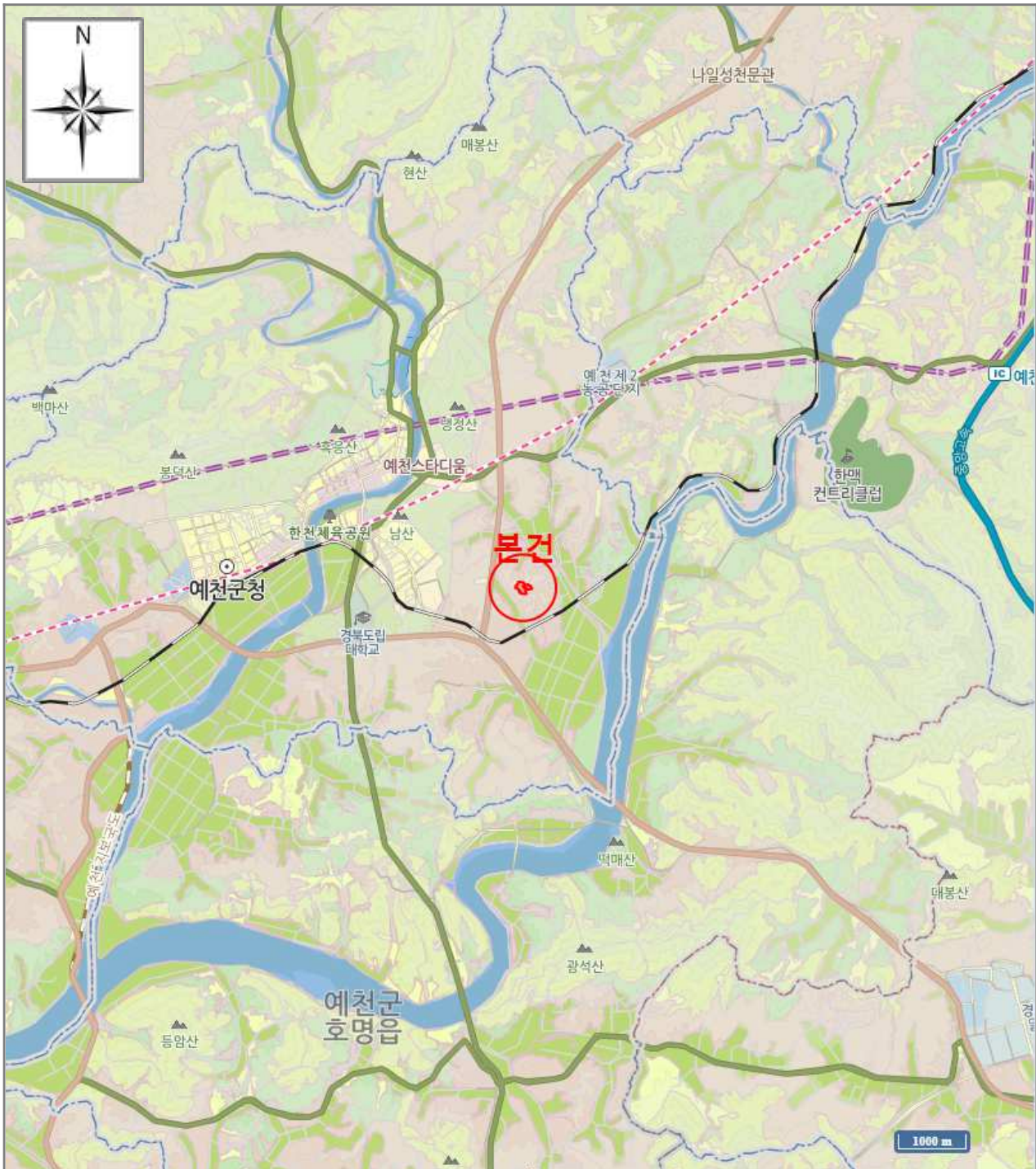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기호3)은 대부분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중인바, 불법형질변경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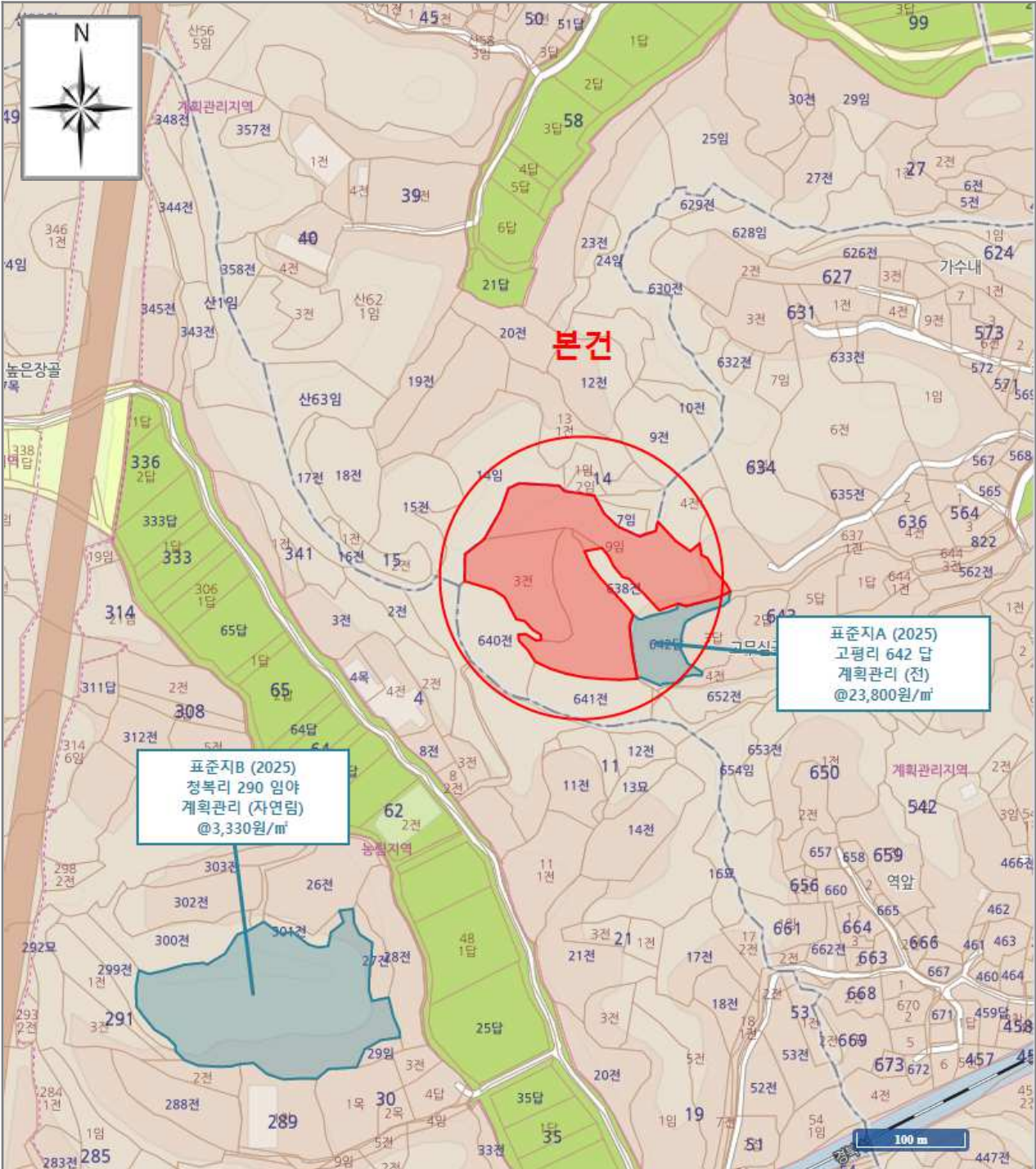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3 외
-----	--------------------------



- [범례]
- 본 건
- 표준지
- 평가전례
- 거래사례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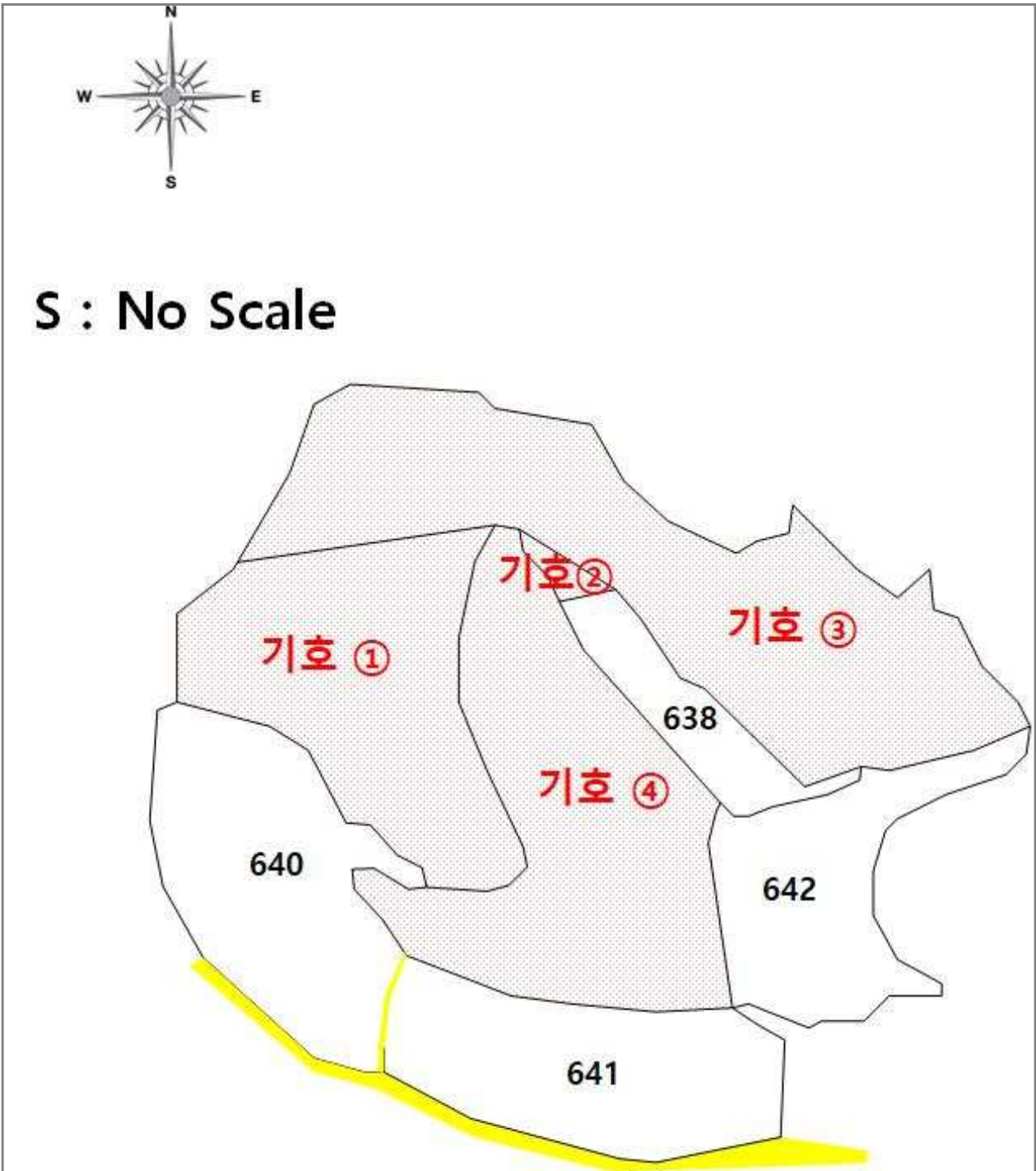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3 외
-----	--------------------------



- [범례]
- 본건
- 표준지
- 평가사례
- 거래사례

지적도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3 외
-----	--------------------------



사 진 용 지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3 외



본건전경



본건주위전경

회 보 서

우)4224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46길 36 101호
E-Mail : boram2024@kapaland.co.kr

TEL. 010-4521-8990
FAX. 0505-182-4521

문서번호 : 보람W25022601호

시행일자 : 2025. 03. 05

수 신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규현

참 조 : 경매1계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우리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2.26자 귀 제 2025타경123호로 의뢰하신『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3 외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 첨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끝.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보람W2502260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귀하

의뢰번호 : 2025타경123

일백일십사만칠백원정 (₩1,140,700.-)

2025-02-26 일자 귀 제 『 2025타경123 』 호로 의뢰하신 『 박세우 소유물건(2025타경123)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평가수수료	626,994	$(695,000 + (98,604,000 \times 9/10,000)) \times 0.8$
나.여비	320,000	
토지조사비	60,000	4필지 x 15,000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28,360	
임대차조사비	-	
기타 실비	2,000	
특별용역비	-	
소계	410,360	
수수료합계(공급가액)	1,037,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액)	103,700	
총계	1,140,7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 청구액	1,140,7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694-44-01055

★계좌번호★

농협 302-1904-9017-61
예금주 : 최원호(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TEL : 010-4521-8990 FAX : 0505-182-4521)